

정책토론회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2018. 11. 13(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국회의원 이학영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굿네이버스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양진옥 회장입니다.

먼저 이학영 국회의원님과 육아정책연구소, 굿네이버스가 함께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굿네이버스 회장 양진옥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학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권리보장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영유아기 아동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 최상의 보육·교육 환경 구축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 주고 계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노력과 활동에도 감사드립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여 년 간 특별히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힘써 왔고, 중앙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운영하면서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아동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적인 관심과 정책, 법제도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음도 보았고,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도 많이 높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영유아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보육 및 교육기관 내 종사자들에 대한 믿음과 격려를 바탕으로 이들이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최선의 보육과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기반해, 육아정책연구소와 굿네이버스가 업무 협약을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영유아와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대 없는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보육·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의 자리가 영유아의 권리 보장 환경 마련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과 노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촉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굿네이버스 회장 양진옥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입니다.

낙엽이 붉게 물드는 11월 가을의 끝자락에 ‘영유아 보육교사 인권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세미나에 오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이학영 의원실과 굿네이버스 양진옥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올 해 육아정책연구소와 굿네이버스는 국책연구기관과 NGO 단체 간 첫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영유아, 보육교사가 모두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교육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대응 메뉴얼을 개발하는 것으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 이제는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 그리고 보육 교사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행복과 인권이 보장될 때, 그리고 아동의 행복과 인권이 보장될 때 우리 사회에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켜보아야 할 책임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사회적 소명과 책임감을 안고 우리 육아정책연구소는 교사와 아동이 모두 행복한 행복 육아, 행복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학영 의원님, 양진옥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발표를 맡아주신 이 선생님, 서울대 맘인스누 이진화 대표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팀장님,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박사님, 토론을 맡아주신 맑은내어린이집 김명미 원장님, 서울시 이미숙 보육담당관님, 굿네이버스에 장희선 연구원님, 경기대 김형모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처음 만나는 사회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난생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시간을 보내게 됩니
다. 단순한 보육의 공간을 넘어 사회성을 배우는 공간인 것입니다. 어
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가 없는 요즘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유명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는 풍경이 낯설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부
모들은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연일 들리는 폭력, 폭언, 부실급식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모습에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CCTV가 의무화된 현실에서 어린이집
과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상호 존중의 모습 역시 찾아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하고 싶은 일로서 직업을 택한 사람입니다. 사소
한 행동에도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받다보니, 하루 종일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것이 불
편하고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극단적 사례로 인해 다수가 제약받고 피해보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그런 점에서 오늘 열린 토론회가 참 중요합니다. 본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정부 부처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아동학대의 발생을 막고 만연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솔직한 대화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상호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어 자리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학 영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 일 시: 2018년 11월 13일 (화) 10:00~12: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프로그램

시간	세부일정	
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사회: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실장)
	축사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
10:10~10:25	사례발표1	교사가 경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야기 이○○ (전 어린이집 교사)
10:25~10:40	사례발표2	학부모가 경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야기 이진화 (서울대학교 부모학생 조합 맴인스누 대표)
10:40~10:55	주제발표1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과 과제 김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10:55~11:10	주제발표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후 대응: 중재기구 설립 가능성 탐색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1:10~11:50	지정 토론	좌장: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대예방을 넘어 인권친화적 보육으로... 김명미 (부평 맑은내어린이집 원장) 서울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전사후 대응 시스템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긍정적인 사후 대응(가제)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50~12:00	질의 응답 및 폐회	

사례발표 1.

교사가 경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야기 1

이○○ (전 어린이집 교사)

사례발표 2.

학부모가 경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야기 7

이진화 (서울대학교 부모학생 조합 맘인스누 대표)

주제발표 1.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과 과제 17

김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주제발표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후 대응: 중재기구 설립 가능성 탐색 25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토 론

좌장: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김명미 (부평 맑은내어린이집 원장) 37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 41

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47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5

사례발표 1

교사가 경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야기

이 ○ ○ (전 어린이집 교사)

교사가 경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야기

이 ○ ○ (전 어린이집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에서 10년 근무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대신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유아교사들은 사회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잠재적인 아동학대의 범죄
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해결 대책이 CCTV 설치로만 귀결되면서 교사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교사로서
의 자부심과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이라는 인식이 CCTV로 교사
의 모든 것을 통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와의 소소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불신과 오해를 초래하여 보육실내에 설치된
CCTV를 교사보다 더 신뢰함에 따라 학부모님과의 신뢰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가 다치거나 가정에서 자녀가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하면 사실
여부를 CCTV로 확인하다 보니 단순한 접촉이나 다른 아동을 돌보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황 등에서도 학대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의심되면 교사를 불신하여 CCTV를 확인
하는 상황은 비밀비재하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교사의 과실로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바로 신고하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CCTV를 돌려봐도 특별한 점이 없으면 다른 장면을 문제
삼거나 CCTV가 없는 사각 지대를 의심하고 정서 학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간이 한 달에서 많게는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학대라고 주장하는 부모님을 힘겹게 마주해야 하고, 심한 경우 부모님께서 가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는 교사의 이야기도 간혹 들곤 합니다.

수사결과 학대 정황이 없다는 무혐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모님의 사과 한마디 없이 교사의 상처와 기관의 피해만 입고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끝은 아닙니다.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면 인근에 있는 여러 기관, 주민 등에게 마치 학대를 한 것처럼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학대 어린이집으로 낙인이 찍혀 이미지 회복이 어렵고, 사건 종결 후에도 아동과 부모님은 계속 그 기관을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과 다시 신뢰를 쌓고 마주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의 문제의 대책이 CCTV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지니고 근무하는 많은 교사들이 더 이상 회의감을 느껴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정확한 근거 없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라는 주장이 무고라고 밝혀질 때 기관이나 교사도 학부모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대의 의심(아동의 이야기만 듣고)만으로 바로 경찰로 신고를 하는 체계를 수정해야 합니다. 학대의 명확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의심만으로는 바로 신고하기 보다는 어린이집, 유치원과도 진위 여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지침이 있어야겠습니다.

셋째, 학대 신고 시 결과가 나오기 까지 수사 과정은 비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인근 주민, 기관에서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공개 수사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학대의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대인 것처럼 치부되어 큰 타격을 입는 기관과 교사를 보호하

기 위함입니다.

넷째, 아동학대의 진위가 교사의 행위자체에 초점을 두는 매뉴얼 내용을 수정·보완 해야 합니다. 명확히 알 수 있는 신체적 학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는 아이를 그냥 두면 학대다’라는 것에는 인과관계에 따라 학대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동을 돌보느라, 다툼이 있는 아동을 중재하느라 등 교실에서는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이 발생하므로 매 순간 모든 아동의 요구를 수용, 완벽히 케어 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행위를 명시할 때는 학대의 행위로만 서술할 것이 아니라 여러 맥락적 이유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CCTV만이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대문제에 대해 교사의 인성만을 강조하며 이를 감시할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할 뿐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은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아동 대 교사 비율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교사 대 아동비율은 0세의 경우 1:3, 1세는 1:5, 2세는 1:7, 3세는 1:15, 4세 이상은 1:2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보육사업안내, 2015). 그러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음식도 혼자서 먹기 어려운 0세, 1세 영아를 교사 한 사람이 3명, 5명씩 돌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프거나 다친 아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교실을 비워야 하는 경우, 울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교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동시에 생기는 상황은 교실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집중하는 경우 다른 아동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가 낮으면 상호작용하는 양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통제활동이 줄어들는데 비해, 교사 대 아동비가 높으면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아를 표면적으로 대하거나 통제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쉽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전문적인 능력 발휘와 전문직으로서의 신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명의 교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돌보면서 교실 내 다른 영유아들을 고무 살피는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비인간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 근무환경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하루 평균근로시간은 9.6시간에서 10.8시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점심을 먹으며 휴식을 갖지만 보육교사에게 있어 점심시간은 혼자 편안하게 점심을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배식, 식사지도, 위생 및 청결교육 등으로 인해 가장 힘든 하루 일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5시-6시 이후 하원한 다음에야 교사의 별도의 업무, 환경 구성이나 수업계획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 이외의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각 기관마다 교사의 휴게시간을 지켜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아동의 낮잠시간에 이루어지며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빈자리는 다른 교사가 대체해야 하고 더 많은 아동을 보육하게 되므로 휴게시간은 사실상 허울일 뿐입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육시간 3시간과 업무시간 5시간으로 구분하고, 2교대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행되기 어렵다면 현장에는 더 많은 인력 요구되며 이에 따른 충분한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권리, 인권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인인 우리가 지켜주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주십시오.

사회적 대우와 권리는 없고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CCTV속 통제와 감시로 아동학대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이 지금 교사의 비참한 현 주소입니다.

사례발표 2

학부모가 경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야기

이 진 화 (서울대학교 부모학생 조합 맘인스누 대표)

학부모가 경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서울대학교 부모학생조합 맘인스누 이진화

stage 1 : 학대의 발생

학대 의심상황 발생 시
부모의 대처 매뉴얼 부재

VS

학대 의심상황 발생 시
기관의 잘못된 대처

학대 사안의 경중에 따른
상세한 대처법,
사후절차 안내 필요

stage 1 : 학대의 발생

학대의 범위, 학대의 정의, 학대의 유형,
학대의 경중 (등급, 경중도 구분)

명문화 필요

stage 2 : 이차 가해

이차 가해의 이해도 부족,
이차 가해 처벌 미비

이차 가해 사례교육
이차 가해 발생시 처벌 규정 마련

stage 2 : 이차 가해

이차가해의 유형

stage 3 : CCTV 확인 및 분석, 보존

CCTV 의 중요성

- CCTV가 없을 시, 어린이의 진술에만 의존

stage 3 : CCTV 확인 및 분석, 보존

CCTV 열람 절차

: 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부모의 열람을 제한

-
- 경찰신고, 고발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학대 사안에 대해서 CCTV 분석, 보존에 대한 규정 필요.
 - 부모 입장에서는 경중을 떠나 경찰신고를 하게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사안이 심각해지기 전 미연에 조치 불가능.

stage 3 : CCTV 확인 및 분석, 보존

현 CCTV 제도의 문제

-
- 사각지대
 - 사각지대 없고, 자유로운 열람 가능하게 하는 등, 잘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 CCTV 확대에 따른 교사 처우 문제 개선

stage 4 : 후속조치

가해교사 즉시 분리, 휴직 및 재교육

- 해당 교사의 재취업 금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심리검사 제도 필요
- 원장이 깊이 관여한 경우, 해당 기관의 총제적인 문제일 경우
: 어린이집 운영 영구정지 제도
- 피해아동측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필요

stage 4 : 후속조치

직간접 피해아동(학대 발생학급 전원) 에 대한 심리검사, 치료 필수화

- 치료의 정도, 빈도, 기한, 치료기관, 비용발생의 문제
: 상세 가이드라인 안내 필요

stage 5 : 예방대책

보육교사 직무소진 문제

교사 자질평가 문제

stage 5 : 예방대책

교사 처우 개선

- OECD 기준으로 개선 시급 (특별히 5-7세, 만3-5세)
- 교사의 처우 개선만이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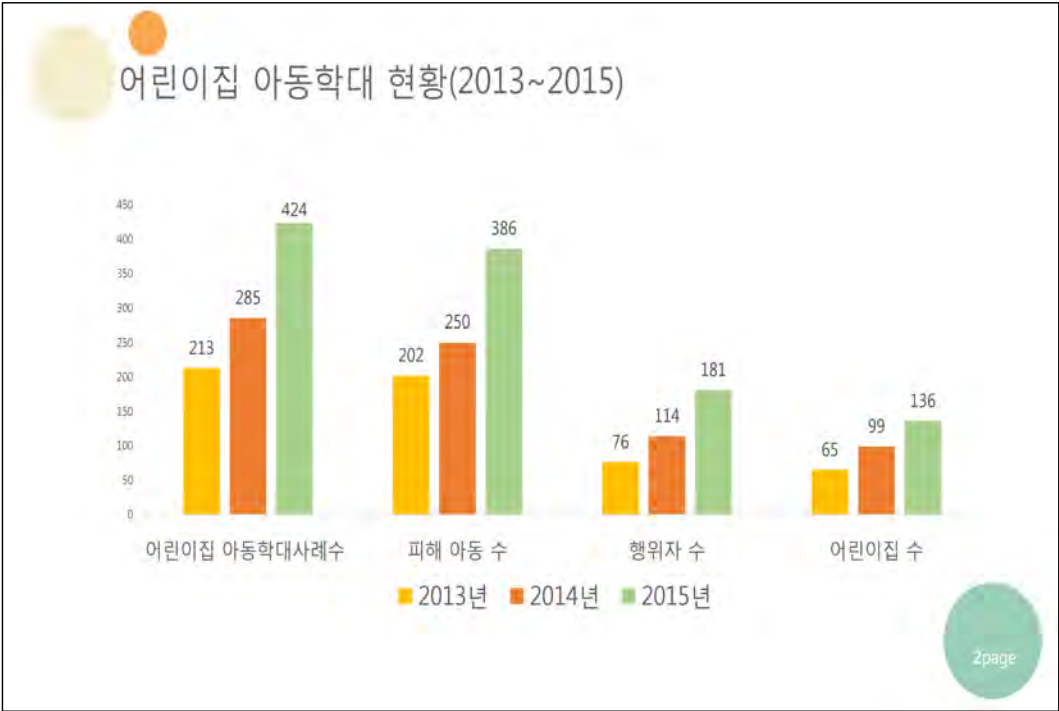
주제발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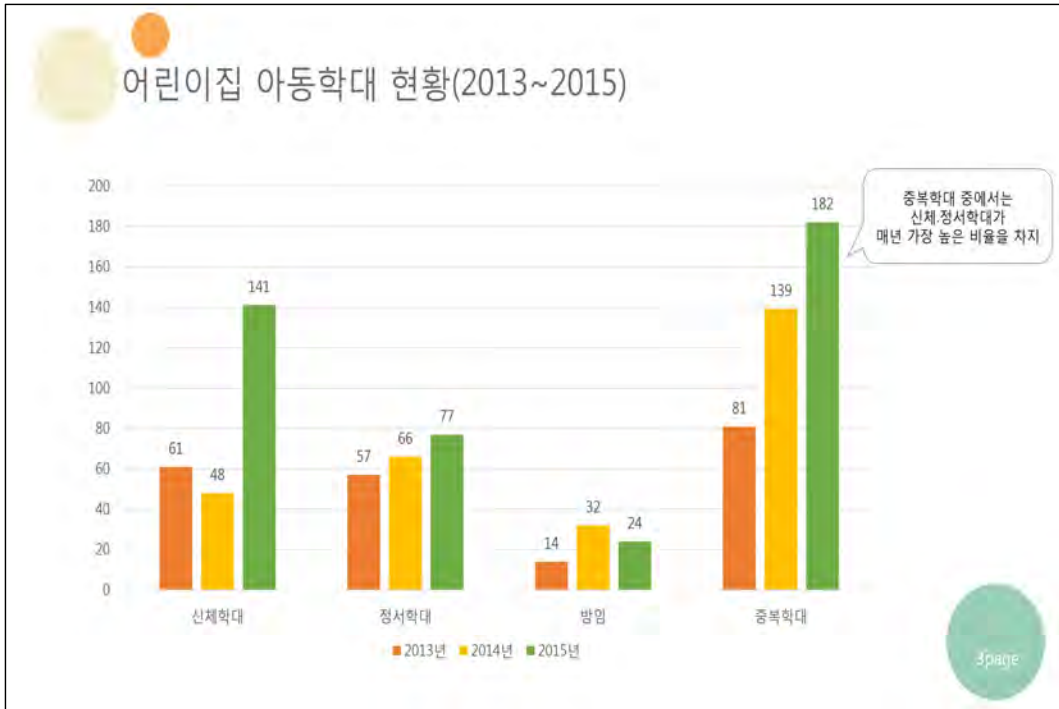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과 과제

김 경 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과 과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 경 희 팀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분석

● 분석대상 : 2015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례 424건

<출처 :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2017>

학대발생시 아동의 행위	학대발생시 보육교직원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 (대집단시 활동에 참여X, 장난감 정리X, 낮잠X 등) 식사습관의 문제(밥을 늦게먹음, 편식)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 (소리지름, 뛰어다님, 친구와 장난 등) 친구와의 갈등 실수를 함(용변, 물 쏟기, 음식 흘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때리기, 밀치기, 잡아끌기, 꼬집기 세게 흔들기, 누르기 바늘, 핀셋으로 찌르기 소리지르기,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가두기, 방치하기 아동이 한 문제행동 따라하기 흘린 음식 다시 먹이기

4page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분석

● 아동학대행위자 특성 : 직무수행 관련

보육교직원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정적이지 않은 반응 • 식사지도 문제 • 체벌과 가혹한 행위를 훈육으로 알고 있음 • 대집단 운영 문제 • 아동보호 문제 •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 • 안전사고 대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 규칙 준수 문제 • 아동보호 문제 • 온정적이지 않은 반응 • 체벌과 가혹한 행위를 훈육으로 알고 있음 • 안전사고 대처 미흡

8page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분석

● 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조직 특성

조직특성	구체적 내용
위계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의 학대 행위를 보고 신고하지 못함 : 퇴직 후 신고 • 원장에게 다른 교사의 학대를 보고하나 묵인 됨 : 학대행위를 못 본 척 하라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김 • 학대 행위에 대한 진술 시 블랙리스트(원장 들 사이에 있는 고용하지 말아야 할 교사 리스트)에 오를 것이 걱정되어 진술을 거부 • 경력이 많은 교사들의 행위가 학대라고 말하지 못하거나 지적을 하면 경력을 내세우며 받아들이지 못함
업무 과중을 조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회 준비, 재롱잔치 준비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거나 과도한 서류 업무가 있다고 진술 • 원감으로서 원장의 일까지 도맡아하고, 아이들도 보육하였다고 진술
교사 간 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들 간 다툼이 있거나 제3의 교사가 교사간 사이가 좋지 않음(편나누기 등)을 진술 • 교사들의 학대행위교사에 대한 진술이 상이함 - 'A교사는 아이들에게 따뜻하며 친절하다(B교사)' vs 'A교사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감정 기복이 심하다(C교사)' • 여러 교사가 한 명의 교사를 따돌리고, 영상을 찍어 학대로 신고
교사간의 소통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이 교사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지 못하게 함 • 각 반 교실에서 생활을 하여 다른 반의 일을 알지 못함
원장과 교사 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과 교사 간 훈육 방식, 원 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다툼

8page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분석

부모에 의한 교사 스트레스

유형	구체적 내용
아동 식사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밥을 다 먹여 달라고 함 아동이 간식을 먹기 힘들어 하니 당분간 간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 어떠한 교사의 제안에도 간식을 다 먹여달라고 함 매운 것을 먹었다는 아동의 말에 교사가 시청에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2주 동안 교실을 참관하고, 1주 동안 복도에서 교실을 관찰
보육 일반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를 만지지 말라고 요구 많이 안아 달라, 트림을 시켜 달라, 이유식을 챙겨달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음 매일 교사에게 연락하고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까다로운 부모의 요구가 있었음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 교사를 탐탁치 않게 여기며 인상을 펴라고 함

7page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 분석

11건의 판례에서 본 아동학대 행위

- 아동이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아동을 끌어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함
- 식사 시 편식을 이유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림
-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아동을 빨랫감 털듯이 바닥에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코를 때림
- 아동이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입을 때리고 30분간 격리시킴
-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동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운서에 묶어 둠
- 간식을 먹다 뱉었다는 이유로 입을 때림
- 다른 아동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둠
- 원장이 교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 원장이 교사의 학대를 방조함

8page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력

● 자기점검 등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전반 살펴보기

- 자료배포, 교육 등을 통한 아동학대 인식 증진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 동료 수퍼비전 등을 통해 보육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 필요

★ 주기적으로 체크리스트 활용해보기

구분	내용
1 교사 심리적 특성(8)	심리적 불안정성, 신체적 소진,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
2 교사 자기 전문성(8)	부적절한 보육태도 및 지식기술 부족, 안전사고 대처능력 부족 등
3 교사 모니터링(17)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모니터링
4 어린이집 조직관리(9)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문성 등

9page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력

● 어린이집 조직문화 개선

- 원장의 직무 인식 능력 및 관리 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 원장 리더십 교육 확대 필요
- 교사들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대체교사 요청 기준 완화 및 대체교사 처우 개선
- 영유아 놀이 중심 보육 실천할 수 있는 표준보육과정 운영 원칙 개정
- 보육실의 법적 공간 크기 확대
- 교사 양성교육 제도 개선

10page

주제발표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후 대응: 중재기구 설립 가능성 탐색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018.11.13.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후 대응 : 중재기구 설립 가능성 탐색

어린이집 사후 대응 절차 관련 개별 당사자 요구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터뷰

번호	근무 지역	경력	영유아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담당 횟수 (최근 1년)	가장 많이 접한 아동학대 유형	학력	전공	성별	연령
1	강서구	5년 10개월	1회	방임	대졸	사회복지	남	33
2	경기북부	11년	10회	신체정서, 방임	대졸	사회복지	남	38
3	영등포구	2년 1개월	3회	신체, 방임	대졸	사회복지	남	29
4	은평구	4년 1개월	20건 이상	모두	대학원 이상	사회복지 정책	남	32
5	성북구	2년 7개월	3-4건	중복학대	대졸	사회복지	여	27

- ▶ 10건 중에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게 많이 없어요. 저희까지 옹기전에 사전에 어린이 집과 잘 얘기가 풀어졌으면 신고나 그런 게 이루어졌을거예요(상담원 05).
- ▶ 원만하게 해서 잘 푸시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간 거죠. 그 얘기를 잘못 꺼내면 그 화살이 잘못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하죠(상담원 02).
- ▶ 현장에 가는거 자체가 조사를 하기위해서 가는 건데 조율을 해서 이거를 풀기위해서 가는걸 아니예요(상담원 01).
- ▶ 저희한테 연락오면 이미 그 단계는 지난거예요(상담원 02).

▶ 제가 볼때는 조사하는 과정들이 학부모가 볼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데, 이걸 규명하는건 쉽지 않고, 아동학대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접수받고 조사를 해야 파악가능하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연되면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에 오해가 심해지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전 조율을 하거나, 메뉴얼에 차라리 112에 신고하라고 하는게 나올거 같아요(상담원 03).

- ▶ 지자체가 관리감독 부서로 수시로 지도방문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심정황이 있으면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아보전에 떠넘기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관련부서로서의 책임은 지자체가 지어야 하는거 같아요. (상담원 03)
- ▶ 저희는 아동학대 판단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닌게 대부분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동기관에서 아동편에 서야지 이걸 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학대가 아니라는 소견을 전달했는데, 경찰에서 잘못 응대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보전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혐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대응이 신고자의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는 의견이고 소견일 뿐인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하는데 아보전에 책임을 돌리는거 같아요 경찰이 그래서 문제예요(상담원 04).

▶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의 문제점 인식

1.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으로 사건이 오기 이전에 양 당사자를 조율하는 과정이 부가적으로 필요
2.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감정' 을 다스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기구 필요
3. 중재 기구 필요: 중재 기구 이후 합의가 안될 경우 아보전으로 오는 것이 효율적일 것

▶ 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중) 의 요구

서울시 육아중의 아동학대 관련 사업

- 아동학대 예방사업 총괄 사업, 아동학대 예방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보육교직원 안전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서울시의 경우 아동복지센터 내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 중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특화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음

▶ 센터장 면담 결과

: 애초에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자 상담원을 배치하였으나 인권교육에 집중하면서 영유아 권리 존중 교육에 더욱 집중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대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대예방 사업을 진행

▶ 저희가 셀프 컨설팅을 해요. 어린이 집에서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전환한 곳을 대상으로해요. 그곳이 간판만 같았다고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1-2주에 한번 모여서 문제를 나누게 해요. 원장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반응을 들어보면 우리안에 답이 있는데, 자꾸 어디가서 교육들으려고 하고 하지만 적용이 안되잖아요. 내 부안에서 힘을 기르고 그럴 수 있는, 저는 상담이나 뭘 만 들어 내는게 또다른 교사의 업무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해요(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 전국적으로 상담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예산도 투입되었으나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보육교직원 정신상담' 기능에 그친 미비한 결과를 생산
- ▶ 이는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중재 내지는 사전 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과정에서 변질되었고 실제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
- ▶ 만약 중재 기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지원, 홍보와 구체적 운영 설계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그 무엇보다 필요

▶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의 요구

저는 전에 일했던 곳에서 최근에 있어서 학대까지는 아닌데 부모가 항의해서 교사가 그만둔적이 있었어요. 교사들도 성향이 다르고 부드럽게 하는게 있고 말이나 그런게 썬 선생님이 있어요. 영아는 안그런데, 유아는 말을 잘 안듣고 말이나 행동이 강해서 교사들이 썰고 말투가 썰요. 그런데 화면으로는 썰게 나오고 그런게 안타깝죠..(교사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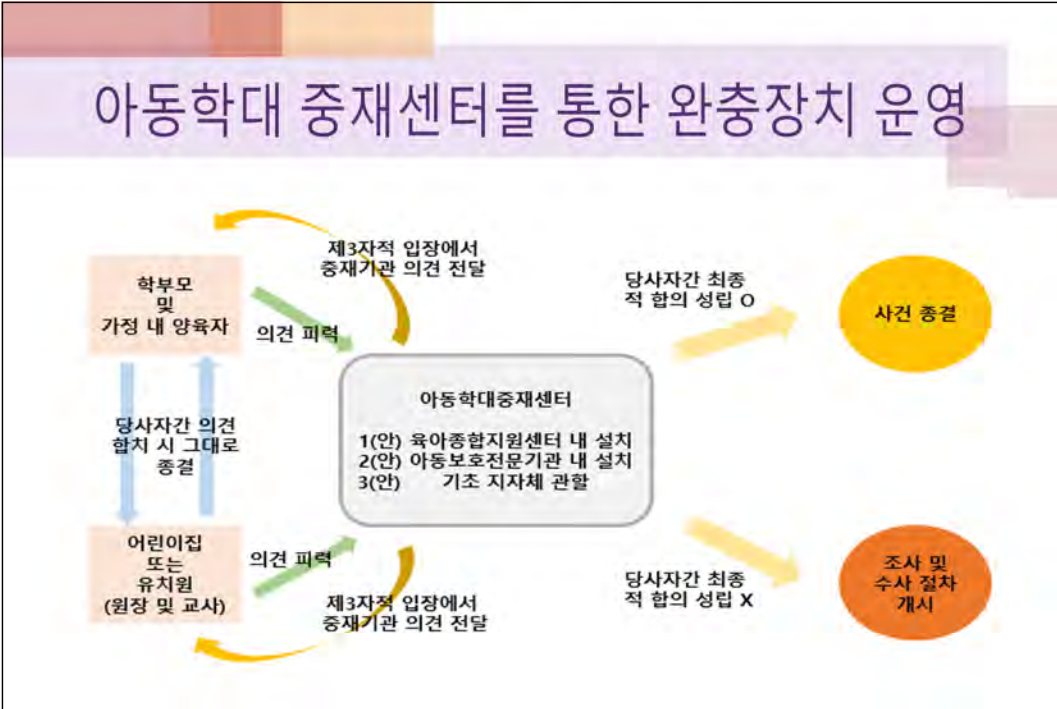
▶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의 요구

학부모로 부터 고발을 당해서, 학부모나 경찰들의 관계자들이 와서 상황을 수업시간에 묻는데 나중에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그냥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할뿐 특별할게 없다고 와서는 취조하듯이 몰아붙이고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고는 없이 가버리니까 그 원장이랑 선생은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유치원 원장 02)

▶ 학부모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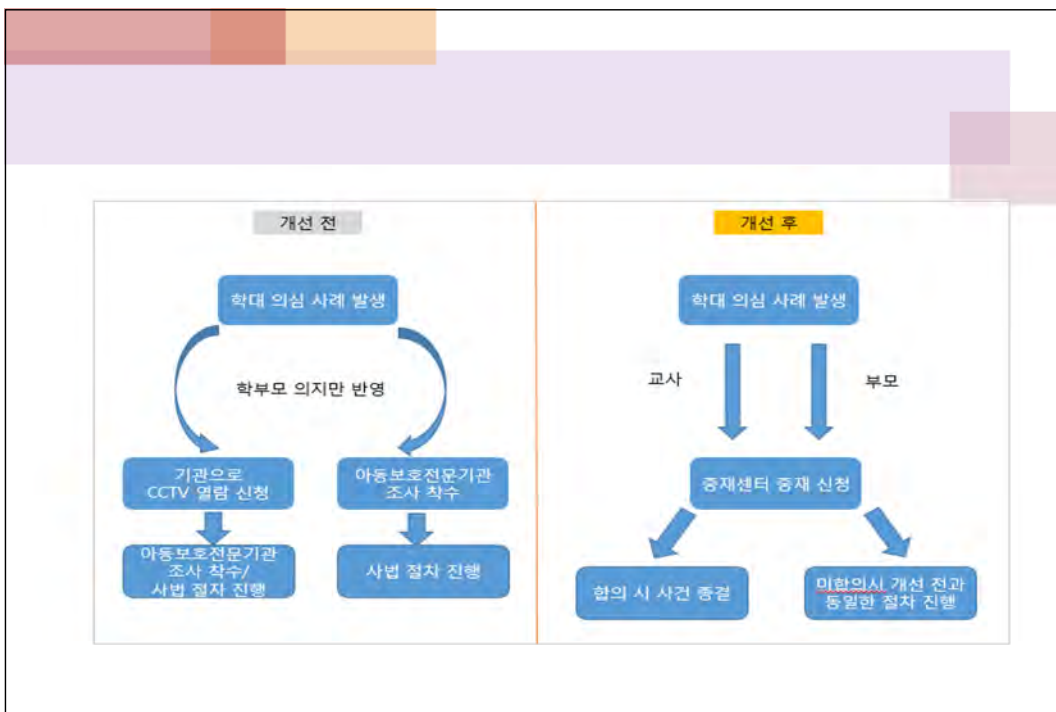
그거를 왜 선생님한테 얘기를 직접 해야되요? 가해자인데?
그리고 현재 시스템은 피해아동 학부모를 고립시켜요. 다른
 엄마들을 더 잘해준다거나.....(학부모 06)

구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	원장	학부모
개입 주체	해당	권한 무	해당하나 의견 표출 기회 적음	해당하나 조율에 있어 어려움	학대 가해자와 상대하기 싫고 객관적 판단을 바람
사법권 발동	보조적 관여	권한 무	사법적 절차까지는 원치 않음	사법적 절차까지는 원치 않음	원치 않으나 감정적으로 소신하다보면 경찰을 먼저 생각
사건 당사자 보호 관련	권한 무	권한 무	보호 기구 필요성 요구	보호 기구 필요성 요구	보호 기구 필요성 요구
CCTV 열람 관련	필요하나 경찰 만큼 확보가 안되는 단점 피력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권한 무	수업에 방해, 아동들과 상호작용에 방해, 보호수단이 된다는 의견도 존재	관리가 불편, 업무에 방해, 방어 수단이라는 의견도 존재	유일하게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의존하는 도구이나 열람 거부가 짚은 상황에 불만



- ▶ 중재센터는 당사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
- ▶ 신속하게 중재 절차에 돌입
- ▶ 중재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사례조사위원회 같은 전문가 위원회 즉시 구성으로 사건의 재구성,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 등을 시행(육아종합센터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참석하여 진행)

구분	개선 전 (현행)	개선 후
개입 주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중재센터에서 합의 미성립시 현재의 개입 주체 발동
사법권 발동	원칙적 개입 가능	원칙적 미개입
당사자 보호 관련	보육교직원 혹은 아동의 입장이 일방적으로만 반영되거나 때에 따라 묵살될 가능성으로 인권 보호 미비	보육교직원과 아동의 인권 양자 보호 모두 가능



- ▶ 보육교사와 아동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 ▶ 비사법적 절차 운영 원칙 지향
- ▶ 지역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참여 도모, 관심 증폭

토론

토론문 1

김 명 미 (부평 맑은내어린이집 원장)

학대예방을 넘어 인권친화적 보육으로...

김 명 미 (부평 맑은내어린이집 원장)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교사들에게 자괴감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있지만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함께 어린이집내에 영유아 인권상황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는 어린이집 CCTV설치 및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화, 직무교육 교과목에 아동권리 과목 신설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부모의 불안감과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아동학대로 의심받던 한 보육교사가 아동가족으로부터 원색적 비난과 함께 맘카페의 신상 털기 식 여론몰이에 상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과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영유아 인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현대사회에서 어린이는 주로 성인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아동이 성인과 같은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보다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기에는 아직 어리니까 성인이 보호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고, 학대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놀 권리가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영유아 인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영유아가 가진 기본권과 아동을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먼저 권리존중의 시작은 교사의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되고 교사들의 자존감이 높아짐으로써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린이집의 일상생활, 교사와 영유아의 수직적 관계, 교실의 폐쇄성, 영유아의 의사표현의 제한 등 아동인권에 대해 반성적 성찰과 함께 일상적인 질문과 논의가 필요하다.

권리존중과 참여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며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인권적인 문제임을 의식하는 것은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이다.

보육환경구성 시 영유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하루일과 운영과정과 급간식 지도 시 영유아의 선택권과 의견을 존중하며 정기적인 동료장학, 직원회의, 교사교육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려면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보육교직원의 개인적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육교직원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등이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편안한 점심시간, 자유로운 휴게시간 사용, 보조인력 지원 등 근무조건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민주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 아동양육의 딜레마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와 동료 간 협력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일상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아봐야 하며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양육문제들에 있어 교사와 어린이집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운영전반을 공개하고 다양한 부모교육과 협력적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여야하며 사회와 국가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인권은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권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아동, 보육교직원, 학부모의 권리가 존중되는 인권친화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토론

토론문 2

이 미 숙 (서울시 보육담당관)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전사후 대응 시스템

이 미 숙 (서울시 보육담당관)

I.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전대응 시스템

□ 예방중심의 접근과 대응으로 선제적 예방시책 적극 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상담사업·인권교육 및 부모 대상 인식개선교육 추진
 - 상담사업 : 아동인권전화상담, 훈육주제 집단상담, 자치구별 집단 및 개별상담
 - 인권교육 : 원장대상 인권교육,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 1~3,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교육
 - ※ 서울시 및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6개소에 개소별 상담전문요원 1명 배치
 - 부모 인식개선교육 실시 : 국공립 입소부모('16년) → 민간으로 확산
 - ※ 어린이집 에티켓, 영유아 발달과정 등 신학기 OT 연계 및 상설교육강좌 개설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대상, 매월「열린 어린이집의 날」1회 이상 운영
 - '15.3월부터 서울시 최초 시행 → '16년 전국 확대(보건복지부 벤치마킹)
-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운영
 - 지정현황 : '15년 66% → '18년 기준, 80.6%(6,088개소 중 4,913개소)
-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활성화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 CCTV 설치

구 분	전체시설	설치예외			설치시설
		계	미설치동의	네트워크카메라	
시설수	6,013	506	47	459	5,507

〈출처 : 보육통합관리시스템('18.10월 기준)〉

- 방문간호사 활용, 학대징후 모니터링 강화 :
2,000개소 월 1.5회(16년) → 3,000개소 월 1.5회(18년)
※ 방문간호사 역할 : 영유아 신체계측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등

II.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후대응 시스템

□ 사후조치 지원 내실화

- 아동보호전문기관(9개소) 및 수사기관과 연계,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학대 사실 확인 시에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 실시

※ 아동학대 발생시 조치

1. 아동학대 발생 ⇒ 경찰서(112) 신고
 2. 경찰 단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원 동행하여 현장조사
 3. 피해아동 조치(아동보호전문기관 주도)
 - ▶ 응급조치 : 가해자로부터 분리 및 일시보호 → 심리상담 및 치료 등
 - 일시보호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등
 - 병원, 상담소 등 연계 치료 및 상담 지원
 - ▶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의 가정복귀 또는 시설보호 등 조치
 4. 학대행위자 조치 : 구속, 벌금, 교육명령, 접근금지, 기소유예 등
 5. 어린이집 조치 : 운영정지 또는 폐쇄,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 등
- ※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71조(벌칙), 영유아보육법 45조(어린이집 폐쇄 등)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기관명	관할구역	전화번호	주소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	2040-4200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 중구, 성동, 광진, 중랑, 노원	2247-1391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	474-1391	송파구 송이로 32길 6 태광빌딩 5층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 양천	3665-5183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 종로, 강북	3157-1391	은평구 은평로 210 AGM빌딩 4층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 구로, 금천	842-0094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 도봉	923-5440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타운힐, 1층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 서대문, 용산	422-1391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	974-1391	노원구 노원로 331 노원아동복지관3층

○ 학대아동 사례관리를 통한 심신회복 지원 및 교사·부모 갈등관리 프로그램 적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사례관리〉

- ▶ 피해아동 :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 ▶ 학대행위자 : 보호처분, 임시 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 ▶ 가족 :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족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사후관리〉

- ▶ 지원종결사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회의 개최,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 조기자원사례 및 일반사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 모니터링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등 실시

토론

토론문 3

장 희 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관한 토론문*

장 희 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무상 보육·교육의 확대 실시로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육·교육기관(이하 ‘기관’)의 기능이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기관이 제2의 가정이라고 일컬어 질 만큼 기관에 대한 보호자와 사회의 기대는 커졌고 그에 따른 요구도 다양해졌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육의 역할과 가치가 증대된 데 반해 최근 몇 년간 언론에 보도된 기관 내 영유아 학대사례는 보호자와 대중들로부터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실제적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되는 반면 실제적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 놓여진다. 이에 기관 내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었고, 모색 방안의 하나로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그간 기관 내 영유아 학대사례는 매뉴얼 또는 훈육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는가? 아마도 대답은 ‘그렇지 않다’일 것이다. 이는 매뉴얼이 일선의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실효성을 보다 담보한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전략과 실질적인 내용을 필요로 한다.

1) 본 토론문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방안」(이윤진·장희선·박은영, 2018)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기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의 방향성과 실제]

□ 매뉴얼의 목적 및 목표

-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 아동학대사례 검토 및 현장 인터뷰 기반의 실효성 높은 실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함
- 보호자·교사·원장 간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함께 조성하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함

* (차별 전략) 기존에 분산되었던 영유아 훈육 지침들의 핵심적 사항들을 재구조화하고 보호자·교사·원장의 '실질적인 욕구'들과 '상호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통합성·체계성·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매뉴얼 구성 전략

- 기관 내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아동학대 사례를 이해하고 학대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실천 방법과 대응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이해 [교육편]

- 기관 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 수준이 높았음
- 광의적 범위의 아동학대 정의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과 학대의 인식 수준의 변화를 감안할 때 세부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란 쉽지 않지만 실제 아동학대사례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I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유형별 발생사례 예시 I				II 기관 내 최근 아동학대 사례 예시 II					
구분	학대 행위 유형	실제 예시 사례	발생 비율 (%)	구분	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학대 내용	
						종수	연령	학대유형	학대 행위 및 상황
신체학대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물기	다른 아동을 깨물어 피 나게 한 만 2세 아동의 영영이를 2차례 손으로 때리고 깨물며 불을 꼬집음	60.0	1	교사	7	만 2세~만 4세	신체학대 정서학대	세계 혼돈, 도구로 때림, 아동 단립 공포분위기 조성
	도구로 때리기	만 6세 아동이 환급 모돈다는 이유로 가위와 연필로 10번 정도 찌름	22.4	2	교사 (3명)	7	만 3세~만 5세	신체학대 정서학대	머리를 세계 금융, 머리 때림 아동 몸을 들어 올림
	흔들기/잡아당기기/밀치기	친구와 싸운 만 3세 아동 억지로 팔 끌고 가서 4~5차례 양쪽 어깨 흔들며 화 책림	12.5	3	교사	1	만 4세	신체학대 정서학대	아동의 팔을 잡고 흔드는 행위 고의적으로 반 내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의 차별행위
	발로 차기/때리기 물건던지기 특정 상황에서 해 입허기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및 축대를 들이받아 아동에게 해를 끼침	5.1	4	원장 교사	4	만 0세~만 1세	신체학대	얼굴과 온몸을 이불로 들들 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함
	소 계			100	5	교사	1	만 3세	신체학대
정서학대	아동의 인격 및 감정과 기본 무시 또는 모욕	매운 음식 섭취 시 물 못 마시게 하고, 반 먹는 속도 느리면 연령 낮은 반으로 보내서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함	33.3	6	교사	2	만 3세~만 5세	신체학대	신체 때림, 턱 잡고 흔들
	공포분위기 조성	아동에게 소리를 질러 공포분위기 조성	31.6	7	원장	1	만 5세	신체학대	아동의 손가락을 물
	아동을 가둠	아동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불 꺼진 화장실이나 방에 가둠	12.3	8	교사	1	만 2세	신체학대	아동의 배와 사타구니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밀침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10~19개월 된 유아에게 가만히 앉아서	22.8	9	교사 (2명)	1	만 2세	방임	차량방치
	소 계			100	10	원장	10	만 2세~만 4세	방임

- 기관 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 외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대 발생 원인과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일선 현장의 욕구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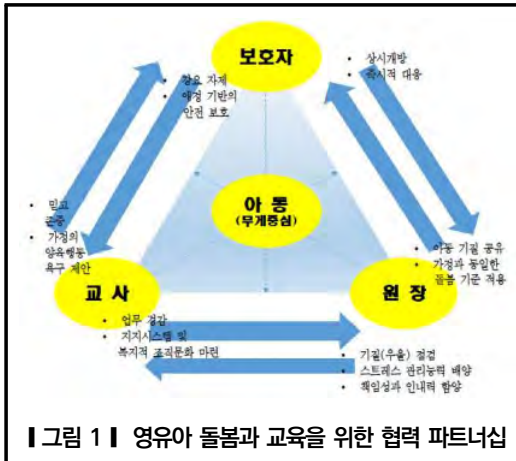
구분	원장	교사	보호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학대 발생 원인 및 상황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자질 (책임감, 참을성) 교사의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아동 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자질 (책임감, 참을성) 과중한 업무 (서류작업 등) 아동-교사 비율 지지체계 부족 아동 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자질 (책임감, 참을성) 과중한 업무 (서류작업 등) 아동-교사 비율 폐쇄적 원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중한 업무 (서류작업 등) 원장과 교사의 미숙한 대처

2)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실천 방법 [실천편]

① ‘협력 파트너십’의 필요성

- 기관에서 발생했던 학대 사례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기질적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관계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문제들이 맞닿아 있음
- 영유아의 행동 교정을 위한 교사의 엄격성은 자칫 학대적인 행위로 귀결될 수 있고 개선 과정이 가정과 병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한계가 존재하며, 스트레스 및 업무 가중 상황에서 교사는 의도치 않게 부정적 감정과 태도를 영유아에게 투영하거나 나타낼 수 있음

⇒ 영유아와 가장 밀접한 핵심 체계들인 보호자와 교사, 원장 간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각 체계가 다른 체계에 기대하는 역할과 욕구가 상이한 만큼 실제 실천은 이러한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어야 함



[보호자] 가장 큰 욕구는 영유아의 안전 보호로, 영유아의 규범을 벗어난 행동에 교사의 강요 자제를 바라며 기관의 상시적인 개방을 통해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함

[교사] 휴게시간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서류 업무가 경감되어야 하며 어려운 돌봄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동료 교사들 간의 지지체계 및 인력 지원 등의 실질적 도움이 필요로 함

[원장] 교사의 상시적 기질 점검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 책임성과 인내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영유아의 돌봄 및 교육의 방향성을 가정과 함께 설정해 나가길 원함

② 영유아의 권리 및 발달단계별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영유아 역시 성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대 권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각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특정 행동이 교사 및 성인에 대한 반항적 행동이 아닌, 시기별 특징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③ 기관에서의 일과에 따른 실천 방법 제공 기관 내 일과(등·하원, 배뇨·손씻기, 급·간식, 낮잠, 전이, 놀이, 정리·정돈 등)에서의 이슈 및 필요 자원, 실천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훈육의 방향성을 제안해 줄 수 있어야 함

④ 기관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훈육 실천 방법 제공 아동의 예기치 못한 행동이나 돌발 행동이 특정 시기에 나타났다가 안정되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고 훈육 방법(격려하기, 잘못된 행동 막기, 잘못된 행동에 대처하기)을 선택하여 실질적인 훈육의 실천 정보(보상,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논리적 결과, 타임아웃, 짜증다루기, 분노와 좌절 다루기, 스트레스 다루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영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아동의 기질이나 발달단계, 욕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보호자, 교사, 원장 간에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의 보육·교육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절대적일 수 없고 단일한 하나의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짓기도 힘들다. 다만, ‘영유아에게 보육·교육은 왜 필요한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육·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되새겨 보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공동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기관 내 보호자·교사·원장 간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론

토론문 4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MEMO

MEMO

MEMO

MEMO

정책토론회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